

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246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8. 2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사유
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기 위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변경사항: 기금 700,000천원 → 일반회계로 전출

- 2024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예치금에서 700,000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

○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도 말 조성액(A)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말 조성액(A+D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기정	8,049,762	125,752	7,093,000	△6,967,248	1,082,514
변경	8,049,762	125,752	7,793,000	△7,667,248	382,514

○ 수입계획: 변동없음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	금 액	기정액	증 감
재정안정화계정	602-01 일반예치금	382,514	1,082,514	△700,000
	701-01 기타회계등 전출금	700,000	0	700,000

12 (제276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제2항제2호

4. 붙임: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참고자료 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. <개정 2025.7.1.>

1.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<개정 2025.7.1.>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